

경관계획내용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규^{1*}

¹충주대학교 토목공학부 도시공학전공

Critic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ndscape Plan -Focused on the Cases of the Province Gyeonggi-

Sang-Kyu Lee^{1*}

¹Division of Civilengineering, Chungju University

요 약 경관계획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계획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물론, 경관계획의 위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대별되고, 이 위계에 맞는 각 자치정부의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경관법주의 논의와 동시에 계획내용이 추상적 수준에서 얼마나 실제적 수준으로까지 서술되고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이 효율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landscape managemen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since the landscape plan is performed through the "routine" process, on which the planning system is based. Many local governments had spent much in making their landscape plans, but these plans were evaluated not so much "useful" in the practical sen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aims to systematically readjust the existing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Korea, is to analyse the landscape plans of the few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ategorized in two level - upper and low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of landscape plan is performed in terms of four factors: The composed structure, the objects of the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 indicators and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

Key Words : Landscape, Landscape Plan, Identity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난개발, 나홀로 아파트, 도시건축물의 무질서, 난잡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현속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경관의 과제 몇 가지는 경관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 제도적으로도 경관관련 계획 및 법속에서 도시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물론, 경관계획의 계획적 수준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조례 및 경관계획들에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둔 차원의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교신저자 : 이상규(thankyu@cju.ac.kr)

접수일 10년 01월 15일

수정일 (1차 10년 02월 13일, 2차 10년 02월 22일)

게재확정일 10년 02월 24일

(2001), 경기도 경관지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경기도의 각 기초지자체들 중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세운 곳은 용인시, 가평군, 과천시, 화성시 등으로 소수이며, 양평군과 김포시가 자연경관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계획 지침은 단순히 참조용에 불과하며, 각 시·군의 경관관련 기본계획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계획 및 관리의 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거의 경관계획, 조례, 지침 등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문제제기 되고 있다(이상규, 2007, pp40~44)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경관계획의 구조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 이내 경관관리계획 또는 경관기본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경관계획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비교분석을 위해 경기도 지역권으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동향 및 최근 쟁점 분석을 토대로 광역지자체 차원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분석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내의 시·군(과천시, 용인시)의 경관계획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경관조례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사례를 선정한 후에 경관계획의 구성, 계획대상 및 지표, 지표의 내용, 제도적 실현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전반적으로 기존 문헌 및 보고서의 자체분석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계획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계량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아 서술적인 평가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경관계획의 연구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첫째, 경관에 대한 해석과 경관평가 방법론 등의 연구로 경관의 범주와 유형 등에 대한 개념적 파악을 중심으

로 한 경관논의의 기초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관계획의 실질적 적용에도 매우 유용한 연구로 1980년대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임승빈, 1999). 이러한 연구는 경관의 평가지표의 개발과 실제로 경관평가를 하는 연구들로 경관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특별 해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지역적 또는 국부적으로 적용된 사례들(공원, 조경분야)이 있다.

둘째, 경관계획 또는 경관기본계획 등의 실무적 연구들로 도시규모 차원에서 경관을 실제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관련된 제도적 틀을 분석하여 관리방향과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는 제도적, 후속장치 등의 미비로 인한 적용의 한계성이 있어 실제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수준은 도시기본계획 수준보다는 하위의 계획이고, 도시 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의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도 2001, 서울시1993, 및 각 지자체 등의 경관계획들).

셋째, 경관을 실제적인 적용메커니즘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경관관리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경관관리계획들이 그러하며, 폭넓게는 경관계획의 법적, 제도적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김한배, 2003).

그러나, 실제적인 경관계획 자체의 계획내용의 실용성 평가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는 계획내용 자체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는데 있어 경관계획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기도 경관관리의 현황 및 문제

2.1 조직 및 관리체계의 문제

경기도의 경우, 경관계획을 2001년에 수립하였는데, 이 때도 경관의 개념정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주택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련한 업무가 있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지침을 통해 경관계획에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있었으며, 환경국 산하의 녹지관리 업무영역에서도 경관계획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등 혼돈을 거듭하여 조직적인 책임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최근 민선4기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공디자인 관련한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경관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성룡, 2008, pp82~83).

하지만, 내부적으로 경관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정의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2.2 경관관리계획 수립지침 내용의 문제

경기도 경관관리 수립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경기도 경관관리 수립지침

주요항목	내 용
경관지구의 지정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경관지구계획 수립기준	관지구계획수립보고서 작성 요령 항목(수립지침 III 참조)에 따라 수립하되, 도시특성에 따라 수립 항목을 조정 적용
도시계획의 반영	-경관지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 지정을 따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경관지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경관지구계획수립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경관지구지정기준을 도시계획조례에 포함하도록 함.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함.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관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먼저, 경관지구의 지정은 지구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 수준에 있어 지구설정이 모호하며, 실제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둘째, 수립기준을 보면, “...도시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협의사항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관련 위원회 및 주민들의 동의 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의 반영은 대체로 지구단위계획에 위임하여 경관계획을 같음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을 담당한다면, 이러한 중복적인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3 경기도 시/군의 경관관련 조례현황

2007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고, 경관조례가 수립된 지역은 수원시가 유일하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양평군, 가평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자연경관보전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경관조례는 없으나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군포시, 화성시, 과천시가 있으며,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는 개별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경기도 31개 시·군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현황

구분	수립현황
수원시	• 2005년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수립
성남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부천시	• 2005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조례 없음.
안양시	• 2003년 경관기본계획 수립/현재 경관조례 수립중
안산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용인시	• 2001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조례 없음.
평택시	•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조례 수립 검토중
광명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시흥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군포시	• 2007년 경관기본계획 수립(도시기본계획 승인 결정 이후 배포), 경관조례 없음.
화성시	• 2005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조례 없음.
이천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김포시	• 경관계획은 없으며 1999년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광주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하남시	• 2007년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 포함(현재 경기도 상정). 경관조례 없음.
의왕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오산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여주군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양평군	• 경관계획은 없으며 1999년 자연경관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과천시	• 2003년 경관기본계획 수립/현재 경관조례 수립중
고양시	• 2006년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 포함. 경관조례 없음.
의정부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남양주시	•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 포함(건교부 승인 기다리는 중). 경관조례 없음.
파주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구리시	• 2004년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 포함. 경관조례 없음.
포천시	• 현재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으나 2008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예정
양주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동두천시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가평군	• 2002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2003년 자연경관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연천군	•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없음.

3. 경관계획내용에 대한 분석

3.1 분석의 틀

3.1.1 경관계획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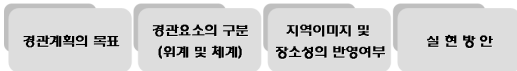
경관계획 작성에서의 경관계획 구성은 계획 내에서 경관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관요소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항목이다. 공간단위의 분화를 통하거나, 지역의 이미지를 고려하는 추상화 단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경관계획 구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질문을 크게 다음의 표 3에서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표 3] 계획구성 질의평가

구분	질문 내용
1	경관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잘 연계되어 있는가?
2	경관계획의 목표와 단위의 구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경관계획 구성 속에서 목표하는 바와 경관계획 전개의 기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계획 작성자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작성된 경관계획의 실효성, 즉 목표의 실현성을 검토하는 것에도 참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 경관계획 구성 분석 아이템

3.1.2 경관계획의 대상 및 지표

경관계획 대상 및 지표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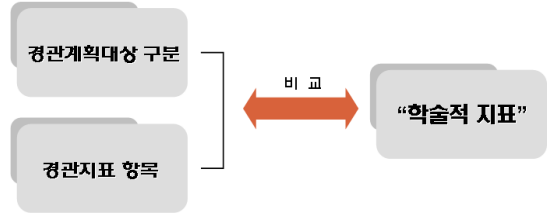
[표 4] 계획대상 및 지표 질의평가

구분	질문 내용
1	계획대상과 지표체계가 상응하는가?
2	해당 계획지표의 차이점/특이성?

계획대상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의 범주를 이해하고,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지표의 체계를 분석하여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것이다.

또한,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언급되는 학술적 지표

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림 2] 경관계획 대상 및 지표 분석도

3.1.3 경관지표의 내용

경관지표의 관리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5의 두 질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표 5] 지표내용의 평가

구분	질문 내용
1	계획지표의 계획기준이 언급되어 있는가?
2	계획기준의 적용가능성?

각 경관계획에서의 계획 대상 및 지표에 대하여 계획적 기준을 제시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적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관계획의 구체적인 계획대상이면서 실현단계로 이끌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지표의 내용과 기준의 역할을 살펴본다.



[그림 3] 경관지표 및 기준의 분석도

3.1.4 경관관리를 위한 실현방안

경관관리 실현방안 분석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설정하였다.

[표 6] 지표내용의 평가

구분	질문 내용
1	제도적 실현방안에 대한 평가
2	실제 적용가능성

-계획서에서 제안한 제도적 방안을 비롯해 포괄적으로 실현방안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실현방안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경관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나 법률적 개선행과 관련하여 제시한 제도적 방안을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로 제시한 실현방안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분석한다.

각 제시된 개선방안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려는 실용성 분석은 사안과 여러 여건변화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무리이지만, 현재적 수준(제도 및 조건 등)에서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림 4] 경관관리 실현방안 분석도

3.2 사례의 선정

경관계획은 크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보통 수립되고 있어 크게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을 일차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광역차원의 경관계획의 사례선정은 경험적 사례가 풍부하고 시사성이 높은 지역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였다(서울시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부터 경관관리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약 7-8년간 경관을 관리하다가 2005년에는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계획의 경험이 많아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광역지자체 계획으로 경관관리 계획의 기본적 요소를 포괄한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2000)을 선정하였는데, 경기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공간특성(도시, 농촌, 해안, 산악 등)을 보이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추정된다.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은 비교적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된 경기도 시/군중에서 선정하여 과천시 경관계획, 용인시 경관계획, 등 총2개를 등을 선정하였다.

3.3 사례의 분석

3.3.1 경관계획의 구성

경기도의 경관계획에서 권역구분과 그에 따른 특색을 파악하고 새로운 중간단위의 목표설정을 한 것은 경관계획의 맥락을 유지할 구성과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경관계획의 미래상인 “...살기 좋은 경기도 건설”과 목표설정의 기본방향의 내용들은 추진전략과 연결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 설정의 적

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개의 시/군 경관계획에서 경관계획의 대상 및 구성요소를 분류한 체계는 대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계획대상들이 경관계획의 목표와 소권역별 목표와의 상관성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3.3.2 경관계획의 대상 및 지표

1) 광역차원의 경관계획

경기도의 경우, 골격적 경관, 권역별 경관, 유형별 경관으로 분류한 점은 경관계획의 분류체계를 잘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골격과 권역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색 있으며,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하지만, 목표체계에서 전체적 미래상과 더불어 골격별, 권역별 목표체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권역의 특징 정도로만 경관계획의 과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부족한 느낌이며, 이러한 권역은 다시 소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아 권역별 구분의 의미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2)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

용인시의 경우, 권역별 경관계획,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구성요소별, 경관중점지구 등을 설정하고 있어 대/중/소분류의 경관분류를 따랐으며, 과천시의 경우는 크게 미시적 경관요소와 거시적 경관요소를 구분하여 경관관리를 구분하였다. 대개의 시/군 경관계획에서 경관계획의 대상 및 구성요소를 분류한 체계는 대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계획대상들이 경관계획의 목표와 소권역별 목표와의 상관성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아 결국 경관계획을 단순히 지역 또는 공간 미화 등의 수준으로 지나친 기능성만을 강조하였다고 판단된다.

3.3.3 경관지표의 내용 및 수준

1) 광역차원의 경관계획

경기도의 경우, 골격적 경관의 요소로 수평적 요소, 선적 요소, 조망대상을 정리하여 계획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자연적 요소의 경우, 경관계획의 가장 실효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자연적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골격적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적 경관지침이 실제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골격적 요소는 인공적 요소들에도 세부단계까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평적 요소, 점적요소, 조망대상 차원에서 계획대상들을

바로 추출하는 것은 논리적 측면에서 단계별 과정이 빠져있다.

권역별 경관을 설정한 부분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계획의도라는 점에서 논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계획 대상에 따른 관리방향을 설정한 것은 매우 체계적 과정으로 보인다.

경기도 경관계획에서 유형별 경관계획을 다룬 것은 경관계획의 전체 구성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유형별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관리 지침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 색채계획, 경관포장 등의 항목의 언급은 필요하지만, 이들은 광역차원에서 일일이 언급하여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 대상 및 지표의 수준

용인시의 권역구분과 주제 설정한 부분은 단순한 자연 환경에 순응한다는 맥락에서 설정되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경관축에 대한 관리지침은 용인시의 골격을 포함하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용인시의 경관계획 대상에 대한 분류체계는 무리가 없으나, 계획대상에 대한 지침수준에서 정립되고 있어 실제적 의미의 경관계획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과천시와 같은 경우에서도 경관계획 대상의 분류는 문제없으나 계획대상에 대한 지침이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과천시의 현장감을 살리는 경관지침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간경관의 실천전략 부분은 적용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3.4 경관계획의 실현방안

1) 광역차원의 경관계획

경기도의 경우, 경관계획의 위상강화를 주장한 부분은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 제정된 경관법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성을 가진다. 특별히 조례의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지원 장치 요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 시 경관영향평가를 엄중히 하라는 주문은 경관요소 및 지표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

용인시의 경우,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참여 및 계몽활동을 통해 경관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은 매우 시사적이라 판단되며, 경관사업의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을 준비

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실효성 있는 주장이라 판단된다.

과천시의 경우, 여타 시/군과 비슷한 제안을 하였지만,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경관관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계획(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조한 점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공원녹지계획 등의 유사관련계획에서도 이 경관계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의 매개체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4. 결론

경관계획과 관련한 경기도의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거의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니라, 경관계획의 적용과 실천적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경관계획 및 경관행정을 평가할 만한 기본 데이터가 거의 전무함을 볼 때, 경관계획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4.1 광역차원의 경관계획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은 지역의 광역적인 구분과 주요 광역축 그리고 주요 광역지자체의 랜드마크 등을 계획의 주요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은 자연경관(산, 산맥, 하천 등)의 연속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광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공경관의 경우 관련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는 컨셉이 필요하다.

계획위계는 대, 중, 소단위로 구분될 것이지만, 이러한 경관계획의 단위에 대한 장소성 및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 미래상을 세밀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일한 정의로 정리되는 것보다는 시나리오 등의 유연한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다양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광역차원의 경관계획은 시/군 계획에 ‘군립’하는 기존 계획체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이며, 시/군 경관계획의 기본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차원의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의 지역단위설정에 있어서 너무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경관유형에 대한 컨셉과

지침 등은 거의 무의미하며, 실용성이 없으므로 과감히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4.2 시/군 경관계획

시/군의 경관계획은 보다 실제적인 계획보고서가 될 필요가 있는데, 목표설정에 있어 역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시/군내의 권역 및 지역 구분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 및 장소성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역경관의 정의 없이 물리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의 실효성과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시/군 경관계획의 계획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기존 계획체계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경관지표 체계를 참조하되, 각 지표에 대한 지역정체성이 맞물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구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관리 방향」, 광주전남비전21 제 45호, 2005.

- [16] 이태열, 「분석적 계층화(AHP)기법의 이해」, 2006.
- [17] 임승빈, 「경관분석론」, 1991.
- [18]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1998.
- [19] 정재희, 「도시경관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모색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1)」, 경남발전 제71호, 2004.
- [20] 최봉문,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경관관리 방안」, 도시문제, 2005년 2월호.
- [21] Perfect · M./Power. G., 「Planning for urban quality」, 1997.
- [22] Hilber · M. L./Ergez, A(Hrgb.), 「Stadtidentitaet」, 2004.
- [23] Steu-fuehrer, A., 「Wohnstandortentscheidungen und staedtische Transformation」, 2004.
- [24] Bundesamt fuer Bauwesen und Raumordnung,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1/2. 2003.

참고문헌

- [1] Saaty, Tomas L,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 2005.
- [2] 김한배,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28권 제6호, 2003.
- [3] 김용수·박찬용,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지표의 연구 경향과 유형」, 2006, 국토계획 Vol. 41 No. 5.
- [4] 니시무라 유키오,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태림문화사, 2003.
- [5] 대한주택공사, 「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 2006.
- [6] 박용성, 「의사결정론」, 2001.
-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I」, 1993.
-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I I」, 1994.
-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II I」, 1997.
- [10] 서주환·양희승, 「AHP 기법을 활용한 경관평가법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32, No.4, 2004.
- [11] 용인시,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2001.
- [12]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2002.
- [13] 이상규, 경관계획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pp40-44.
- [14] 이성룡, 경기도 경관관리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p82-83.
- [15] 이인성, 「경관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이 상 규(Sang-Kyu Lee)

[정회원]



- 1989년 8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도시설계석사)
- 2001년 7월 : 독일 도르트문트대학교 공간계획학과(공학박사)
- 2002년 8월 ~ 2008년 3월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2010년 2월 ~ 현재 : 충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도시설계, 생태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